

구미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 미 시

구미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2026. 4. .

제출자 : 구미시장

1. 제안이유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중소기업이 경영하는 서점을 지역 서점의 범위에 포함하여 지역서점 육성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역서점 요건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추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중소기업이 경영하는 서점

나. 지역서점 활성화 시책의 추진 대상 확대(안 제3조)

3. 조례안 :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소상공인기본법」,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감사담당관, 정책기획과와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붙임)

구미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 경영하는 서점

제3조제2항 중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지역서점에”를 “제2조의 요건을 갖춘 지역서점에 대하여”로 한다.

제5조제1항제4호 중 “시”를 “구미시”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지역서점 요건) ① 이 조례에서 “지역서점”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서점을 말한다.</p> <p>1. ~ 3. (생략)</p> <p><u><신설></u></p> <p>4. (생략)</p> <p>② (생략)</p>	<p>제2조(지역서점 요건) ① ----- ----- ----- --.</p> <p>1. ~ 3. (현행과 같음)</p> <p>4. 「<u>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u>」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 경영하는 서점</p> <p>5. (현행 제4호와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제3조(시장의 책무) ① (생략)</p> <p>② 시장은 「<u>소상공인기본법</u>」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지역서점에 활성화 시책을 우선 추진할 수 있다.</p>	<p>제3조(시장의 책무) ① (현행과 같음)</p> <p>② ----- <u>제2조의 요건을 갖춘 지역서점에 대하여</u> ----- ----- -----.</p>
<p>제5조(활성화 추진 사업) ① 시장은 지역서점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p> <p>1. ~ 3. (생략)</p> <p>4. <u>신</u>에서 개최하는 각종 축제와 지역서점 연계</p> <p>5. ~ 7. (생략)</p>	<p>제5조(활성화 추진 사업) ① ----- ----- ----- -----.</p> <p>1. ~ 3. (현행과 같음)</p> <p>4. <u>구미시</u>----- -----</p> <p>5. ~ 7. (현행과 같음)</p>

관계법령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자의 범위) ① 「중소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일 것

가.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과 해당 기업의 평균매출액 또는 연간매출액(이하 “평균매출액등”이라 한다)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을 것

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일 것

2.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일 것

가. 삭제 <2020. 6. 9.>

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법인(외국법인을 포함하되, 비영리법인 및 제3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이 주식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기업. 이 경우 최다출자자는 해당 기업의 주식등을 소유한 법인 또는 개인으로서 단독으로 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합산하여 해당 기업의 주식

등을 가장 많이 소유한 자를 말하며, 주식등의 간접소유 비율에 관하여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항을 준용한다.

- 1) 주식등을 소유한 자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임원
- 2) 주식등을 소유한 자가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인인 경우:
그 개인의 친족

다.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제7조의4에 따라 산정한 평균매출액등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

라. 삭제 <2017. 12. 29.>

② ~ ⑤ 생략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2.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소상공인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소상공인으로 본다. 다만, 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소상공인의 범위 등) ① 「소상공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 수가 업종별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 10명 미만
2. 제1호 외의 업종: 5명 미만

② ~ ④ 생략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7조의2(지역서점 활성화 지원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서점(이하 “지역서점”이라 한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실정에 따라 지역서점의 요건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1. 관할 지역에 주소와 매장을 두고 불특정 다수가 이용할 수 있을 것
2.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서적 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을 것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경영할 것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역서점 활성화 정책의 수립 및 지원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지역서점에 관한 실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실태조사 결과 지역서점이 없는 지역에 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의 지원책을 마

련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역서점 활성화 정책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서점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교육감과 협력하여 관할 지역의 도서관(「도서관법」 제3조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이 도서를 구매하는 경우 지역서점을 이용하도록 독려하여야 한다.

⑥ 제2항에 따른 지역서점에 관한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 관 부 서		시립중앙도서관
입 안 자	과 장	류 정 숙
	팀 장	최 희 경
	담 당 자	정 예 영 (480-4663)